

질의내용	답변
부를 언제 확인하여야 하나요?	<p>의료인 채용예정자(노무 제공자 포함)에 대해 채용(노무 제공) 전에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여야 합니다.</p> <p>- 취업(재직) 중인 자에 대해서도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며, 법 시행일(12.8.2)이후 빠른 시일 내에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.</p>

※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, 아래의 번호로 연락바랍니다.

- Q1 ~ Q5: 보건복지콜센터(☎129),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(☎02-2023-7324, 7321)
- Q6 ~ Q7: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(☎02-2075-8782)